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40
----------	------

제출년월일 : 2009년 5월12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건강하고 편안한 행복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건강한 공공정책과 종합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건강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한방건강도시로의 제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사업의 기본 원칙(안 제3조)

-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나. 한방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 구성(안 제5조 ~ 제9조)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위원은 교수·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 직능단체대표 등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자

○ 회의(안 제10조)

-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

○ 수당(안 제11조)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다.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안 제13조)

○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등

라.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안 제14조)

○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 상호협력

3. 의안전문 : 불임

4. 관계법령 : 불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 터”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문가 집단 및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생활 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9.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 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한방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도시와 관련 되는 본부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③(생략)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 2.29>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③, ④(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천시 공고 제 2009 - 508호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4. 8.

제 천 시 장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건강하고 편안한 행복 제천을 만들기 위하여 건강한 공공정책과 종합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건강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한방건강도시로서의 제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사업의 기본 원칙(안 제3조)

-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나. 한방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 구성(안 제5조 ~ 제9조)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위원은 교수·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 직능단체대표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회의(안 제10조)

-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

○ 수당(안 제11조)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다.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안 제13조)

○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등

라.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안 제14조)

○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 상호협력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4월 29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한방경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82, FAX 641 - 5079 담당자 : 유재운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제1항행정주 제2항	제3항사업분야	제4항경과 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유재운	길형준	05/01 이주식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한방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09-508호
3. 공고기간 : 2009. 4. 8 ~ 4.28(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 수 : 37명
 - 의견제사자 : 없음

붙임 : 공고안 1부.(별지) 끝.